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 안 번 호	29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에 대한 상위법 위임규정이 없고 상위법 상 포괄된 사항이며 상위법만으로도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관련 사무가 가능한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나. 폐지 관련 법령 및 근거

<금지 행위 관련(조례 제6조)>

-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조례 제6조(하천 및 하천 산책로 등에서 금지행위) 제1항 제1~2호를 포괄하고 있음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월령2개월 이상인 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제1항 ➔ 조례 제6조(하천 및 하천 산책로 등에서 금지행위) 제1항 제3~4호를
포괄하고 있음

제19조(야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 조례 제6조(하천 및 하천 산책로 등에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를 포괄하고 있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뭉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과태료 및 벌칙 관련(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 및 벌칙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야하고 구체적인 위임 없이는 조례에서 정할 수 없음. (해당 법률 위임 규정 없음)

-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제3항제4호 ➡ 조례제7조(과태료)제1항을 포괄하고 있음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으며, 조례 없이도 과태료 부과 가능)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제1항제6~7호 → 조례 제7조(과태료)제3항을 포괄하고 있음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으며, 조례 없이도 과태료 부과 가능)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증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제1항 → 조례 제7조(과태료)제4항을 포괄하고 있음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으며, 조례 없이도 고발조치 가능)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경범죄처벌법」

나. 합의 : 해당없음

다. 예산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2022. 7. 28. ~ 8. 17.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동 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에 포함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건설교통국 치수과장 김윤기